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고, 자유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화상,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유형 등의 집행지휘 후 지휘 내용을 정정하거나 집행유예 실효지휘 후 이를 취소·정정할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유를 현행 「형법」 조문에 맞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검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31. ~ 7. 1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판의 결과통지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을 “재판결과 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 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으로, “기재해야”를 “기재하여 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형집행정정지휘서)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 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정지휘서에 의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 4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확정 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인용결정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 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에 대한 취

소지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서 에 의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 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후 사정변경 없이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 우,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구치소 또 는 교도소에 출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가 화상,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지휘	검 사: ㉠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함		
수 형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판 결	선 고	
	형 명	
	형 기	
	확 정	
형 기 기 산 일		
미 결 구 금 일 수		총 0일 (1심 0일, 2심 0일, 3심 0일)
비 고		
첨 부: 판결등본 1통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정지휘 검 사: ㉑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함

수 형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판 결	선 고	
	형 명	
	형 기	
	확 정	
형 기 기 산 일		
미 결 구 금 일 수		총 일 (1심 일 , 2심 일 , 3심 일)
비 고		
첨 부: 판결등본 1통		

210mm × 297mm(백상지 80g/㎡)

○ ○ ○ ○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검 사: ㉑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63조의 형집행유예의 실효 사항이 발견 되었으므로 형집행할 것을 지휘함.

집행유예			재범		
피고인	성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죄명			죄명		
선고법원			선고법원		
선고일			선고일		
확정일			확정일		
집행유예기간		.부터	고의로 범한 범죄일시	. . .	
		.까지	고의로 범한 범죄죄명		
형명 · 형기		단 년간 집행 유예	형명 · 형기		
미결구금일수		총 일(1심 일, 2심 일, 3심 일)	형기종료일		. . .
첨부 : 판결등본(형집행유예) 1통, 형집행지휘서(재범) 1통					

210mm × 297mm(백상지 80g/㎡)

○ ○ ○ ○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 검 사: ㉠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63조의 형집행유예의 실효 사항이 발견 되었으나,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를 지휘합니다.

집행유예			재범		
피고인	성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죄명			죄명		
선고법원			선고법원		
선고일			선고일		
확정일			확정일		
집행유예기간	. . .부터		고의로범한 범죄일시	. . .	
	. . .까지		고의로범한 범죄죄명		
형명 · 형기		단 년간 집행 유예	형명 · 형기		
집행유예실효 지휘일 (미집자검거일)		(. . .)	상소권 회복결정일		. . .
첨 부 :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사본) 1부, 상소권 회복 결정문 1부.					

210mm × 297mm(백상지 80g/㎡)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검 사: ㉠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아래와 같이 형집행유예의 취소
형선고유예의 실효 청구를 합니다.

유예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판 결	선 고	
	형 명 · 형 기	
	확 정	
유 예 기 간	시 기	
	종 기	
(청구사유)		
1.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대상사건은 별첨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0000. 00. 0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취소청구 대상사건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움		
2.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대상자는 위 유예기간 중 별첨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음 / 대상자는 별첨 판결등본과 같이 000 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 하고 그 정도가 무거움		

210mm × 297mm(백상지 80g/㎡)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지지휘

검 사: ㉠

아래와 같이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함

수 형 자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세)
죄 명		
판 결	선 고	법원
	형 명 · 형 기	
	확 정	
미 결 구 금 일 수		총 일 (1심 일 , 2심 일 , 3심 일)
결 정 연 월 일		
정 지 사 유		
정 지 기 간		
조 건		
비 고		형집행 정지자에 대한 관찰상 필요하오니 신원인수자에게 신원인수서를 받아 송부하여 주시고 잔형기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210mm × 297mm(백상지 80g/㎡)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구치소장

검 사: ㉠

제 목: 남은 형기 집행지휘

아래와 같이 남은 형기의 집행을 지휘함

수 형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형 명 · 형 기		징역 년 월에 대한 남은 형기 금고
미 결 구 금 일 수		총 일 (1심 일 , 2심 일 , 3심 일)
남 은 형 기 기 산 일		
전 복 역 교 도 소		교도소 구치소
사 유		형집행정지결정취소,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비 고		

210mm × 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u>재판의 결과통지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u>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u>별지 제1호 서식의 집행원부에</u> 정해진 사항을 <u>기재해야</u> 한다.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 <u>재판 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u> --- <u>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u> --- <u>기재하여야</u> ---.
<신 설>	제4조의2(형집행정지지휘서)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u>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지휘서에 의한</u> 다.
제9조(사형집행구신) ① (생략)	제9조(사형집행구신) ① (현행과 같음)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호적등본</u> 1통	3. <u>가족관계등록부</u> ----- --
4.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4. -----

<u>호적의 기재가 상이한 때에는 사실조사보고서</u>	<u>가족관계등록부</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제16조(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자유형의 집행중에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u>다만,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형법 제39조제2항의 적용이 있는 때에는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함과 동시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지휘서에 의하여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하여야 한다.</u>	②----- ----- ----- ----- --. <단서 삭제>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등) ① · ② (생략)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 <u>형법</u> 」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확정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